

운영위원회 규약

제정일: 2021년 2월 26일



제1조(설치)

이사회는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조(구성)

위원회의 장은 이사장으로 하며,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하고 정관상에 정한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결의)

운영위원회는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.

- 가. 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른 집행 및 실행 및 보고
- 나. 이사회 의결 사항 외에 조합운영 실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
- 다. 이사회 의결 사항 외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
- 라. 그 외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협의
- 마. 협동조합 내규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

제4조(회의)

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

